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11. 2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60호로 2013년 11월 14일 운동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한부모 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을 명시함.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예산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경제위기와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4,111건 2012년에는 10,943건으로 조사되어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10년간 86명에 이를 정도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3.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